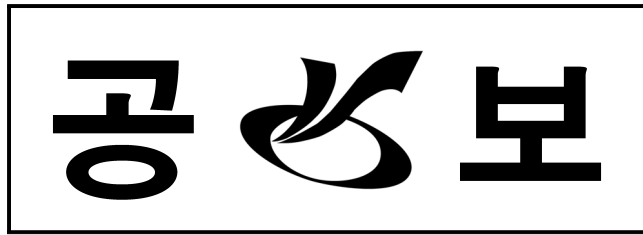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75호

2007년 4월 23일 월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75호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76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조례 4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77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7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78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0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673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4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18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시 22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19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4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23

회 람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문화공보과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65호 공시송달 공고(자동차관리법위반처분사전통지) 24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68호 공고문(확인서발급신청사실) 26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69호 공고문(확인서발급신청사실) 27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81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백석지구소 3-1호선 일원
외 1개 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28

조 례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7년 4월 23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75호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중 “시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구의 기부심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7년 4월 23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76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정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라 함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타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하여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주민·단체의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①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정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①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②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①구청장은 규칙 제33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8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오전8시 이전과 오후6시 이후(동절기 오전8시 이전과 오후5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규칙 제33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8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3. 기타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정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10조(소음저감 개선명령 등) ①구청장은 사업자가 제8조 각 항을 위반하였거나, 제9조 각 호 1의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소음발생 장비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음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①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진동규제법」 등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중소기업의 방지사설 자금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7년 4월 23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77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 지역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농산물 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3.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구입 및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 및 기타 시설·설비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지원) ①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식품비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서구에 소재하고 「학교급식법 제4조」에 규정된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다만, 직영급식 실시 대상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및 관련 국장
2. 관할교육청 관련국장
3.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서구 관내 영양사 및 조리사 협회에서 추천한 자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자
6.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7. 농·수·축산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자
8. 서구 관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9. 기타 관련 전문가 등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관련국장 및 관할교육청 관련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각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에 대해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식품비 및 시설·설비비를 보조받은 지원대상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거나, 시설·설비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받은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학교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구지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7년 4월 23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78호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별표와 같다”를 “별표에서 정한 범위내로 한다. 다만 2종 이상의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에는 20%를 감면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시실”을 “세미나실, 체육관”으로 하며, “수영장”을 “수영장, 헬스장”으로 한다.

제7조중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중지를 연 1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사용료 제납 및 연 2회 이상 회관 사용 취하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제1호중 “수영장”을 “수영장, 헬스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납부하여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당일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료를 제2호의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내에서 고지서를 재발행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중 “5할을”을 “50%를”로 하고, 제3항중 “수영장은 제외한다”를 “수영장, 헬스장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30%, 등록 장애인은 50%의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의 제3호 내지 제6호 및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이 조례 또는 동조례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6.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전시실”을 “세미나실, 체육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연·전시”를 “공연·행사”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를 “「공공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8조중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사용허가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검단복지회관 사용료(제6조와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기준	사 용 료		비 고
		공연(영화)	행사	
가. 대강당	오전	30,000	45,000	○ 오전 (09:00~13:00) 오후 (13:00~18:00) 야간 (18:00~22:00) ○ 공연 및 행사당일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토요일 오후 및 야간, 공휴일은 당해 기준 사용 료의 20%를 가산함 ○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1시간미 만은 20%, 2시간미만은 50%, 2시간이상은 다 음회의 100%를 추가징수 ○ 익일의 공연이나 행사준비를 위하여 22: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50%로 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함
	오후	45,000	65,000	
	야간	70,000	90,000	
나. 세미나실	1회	30,000		
다. 체육관	1시간	3,000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피 아 노		1대/1회	20,000	○ 조명연출을 필요로 하는 조명에 대해서만 조명료를 징수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 공연 및 행사당일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사용료의 50%로 함
음향	마이크 (설비포함)	기본 3개 추가 1개당	10,000 3,000	
	W/L (설비포함)	1일 1개	20,000	
	PIN (설비포함)	1일 1개	30,000	
	MR (AR, BGM)	1회	10,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조 명		1 시간	20,000	
공 바 톤		1일 1개	10,000	

3. 냉·난방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냉·난방 사용료	대강당	1시간	시설별 시간당 연료 (전기포함) 시가에 10%를 가산한 금액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매시간 초과시 기준 요액의 20%를 가산한 금액
	세미나실	1시간		
	체육관	1시간		

4. 교육수강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강료(월)	비 고
취미·교양·문화 프 로 그 램	주당 2시간이하	13,000	○ 재료비는 별도 본인 부담 ○ 교육과정상 4주를 1월로 봄 ○ 1월, 1인 기준
	주당 2시간초과	17,000	
체육 프로그램	주당 2시간이하	15,000	
	주당 2시간초과	20,000	

5. 수영장, 헬스장 입장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성 인	중고생	초등생이하	
수영	강습 (월이용)	개인	50,000	40,000	35,000	○ 단체라 함은 20인이상이 동일소속 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회원이라 함은 1월을 단위로 입 장하는 자를 말함 ○ 개인강습 프로그램수강료=월사용료 ×500% 이내 ○ 1일에 1회만 출입하는 기준 금액임.
	자유이용 (월이용)	개인	42,000	33,000	28,000	
	1일이용	개인	3,000	2,200	1,500	
		단체	2,800	1,700	1,400	
헬스	월이용	개인	30,000	20,000	20,000	
	1일이용	개인	2,000	1,000	1,000	

【 비 고 】

-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사용료 월5,000원 범위내, 열쇠분실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재발급수수료 1,000원의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규 칙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7년 4월 23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673호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사용예정일 30일 이전에”를 “사용예정일 30일 이전 또는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상·하반기 정기대관 일정에”로 하고, “행사 5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를 “회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중 “전시프로그램”을 “행사프로그램”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복지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공연 전시”를 “공연 행사”로 하며, “공연 전시, 행사”를 “공연 행사”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전시”를 “행사”로 하며,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의 “관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중 “전시”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월 2회”를 “매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매월 첫째, 셋째주”를 “매주”로 한다.

제13조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1호의 “3개월 평균하여 1월의 회원 등록수가 10인”을 “수강생 모집 시 정원대비 접수율이 60%”로 한다.

제14조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제8호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승·하차 지정장소 준수 운행

②회관운영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제20조제2호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자체운영규정)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은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및 제6호서식 내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검단복지회관사용신청서

단 체 명		대표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단 체 의 소 재 지 또는 대표자 주소	E-MAIL :			연락처	사
					자
공 연 , 행 사 의 명 칭					
공 연 , 행 사 의 내 용					
사 용 기 간 및 시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회 시간)				
행 사 · 안 내 요 원 수				출 연 인 원 수	
				관 램 예 상 인 원 수	
사 용 시 설 및 설 비	기 본 시 설	☐ 대강당			
	부 속 시 설	☐ 조명 ☐ 음향(마이크 추가 개) ☐ 냉난방 (시간) ☐ 피아노 ☐ 공바톤			
입 장 료					
비 고	첨부 :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검단복지회관사용변경허가신청서

행 사 명 (단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본 행 사 일	년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일간)	사전준비일	년 월 일 요일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변경 내역					
시 설 구 분			사용시간 및 사용여부	사 용 료	
기 본 시 설 (대 강 당)	공 연 (행 사) 준 비	당 초			
		변 경 (추 가)			
	본 행 사	당 초			
		변 경 (추 가)			
부 속 설 비	부 대 조 명	연 출 조 명			
		핀 스포트			
	무 대 음 향	기 본			
		마이크(개당)			
	피아노				
	V. P.				
	M. R.				
	녹 음				
	냉 방				
	난 방				
	공바톤				
기타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검단복지회관사용변경허가서

허가번호	-			
행 사 명 (단체명)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본행사일	년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일간)	사전준비일	년 월 일 요일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변경 내역				
시설구분		사용시간 및 사용여부	사 용 료	
기본시설 (대강당)	공연(행사)준비	당 초		
		변경(추가)		
	본 행 사	당 초		
		변경(추가)		
부속설비	무대조명	연출조명		
		핀 스포트		
	무대음향	기 본		
		마이크(개당)		
	피아노			
	V. P.			
	M. R.			
	녹 음			
	냉 방			
	난 방			
	공바톤			
	기타사항	“허가조건” 참조		총 사용료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6호서식)

검단복지회관사용료감면(면제)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E-MAIL :		연 락 처	☎	
				H-P	
공연, 행사의 명칭					
공연, 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 간	년 월 일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일 회 시간)				
행사안내 요 원 수				출연인원수	
				관람예상인원수	
사용시설 및 설 비	기본시설	☐ 대강당 ☐ 세미나실 ☐ 체육관			
	부속시설	☐ 조 명 ☐ 음향(마이크추가 개) ☐ 냉·난방(시간) ☐ 피아노 ☐ 공바톤			
감면(면제) 신청사유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관련 증빙서류 1부					

(별지 제7호서식)

입 장 권 검 인 신 청 서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행 사 명 :

○ 사용시설 :

○ 판매기간 :

○ 입장권 판매 검인내역

구 분 입장권	검 인		비 고
	수 량	금 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입 장 수 입 정 산 내 역 서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전화 :)

○ 행 사 명 :

○ 사용기간 :

○ 입장권 수입내역

구 분 입장권	검 인		판 매		잔매	정 산 내 역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입 장 수입액	당 초 사용료	추가 사용료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내역을 붙임과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 명 (인)

입회자 직급 성 명 (인)

확인자 직급 성 명 (인)

고 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 -18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월 1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 업 명 : 석남동 민영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김창현 (주) 서보 종합건설 대표 서장원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서구 석남동 560-18번지
 - 나. 대지면적 : 1,205.6㎡
 - 다. 연 면 적 : 3,900.81㎡
 - 라. 사 업 비 : 4,776,882천원
 - 마.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9층 1개동 32세대
 - 바. 사업기간 : 2007. 4 ~ 2008. 2
4.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변경사항 없음”
5. 변경사항
 - 가. 사업주체변경
 - 변경전 : 김창현 (주) 천지인 종합건설 대표 김도영
 - 변경후 : 김창현 (주) 서보 종합건설 대표 서장원
 - 나. 지번변경
 - 변경전 : 서구 석남동 560-18번지와1필지(석남동 560-2번지)
 - 변경후 : 서구 석남동 560-18번지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19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4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소로1-4호선 사업명:서구 연희동 소로1-4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7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업 시행지 : 서구 연희동 701-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도로(소로1-4호선)

【명칭】 서구 연희동 소로1-4호 도시계획시설사업

3. 사업의 규모

연번	시설명	규모	비고
1	도로 : 대로1-4호선	L=0.148km, B=12m	도로개설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박인규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5동 장승북3길 30(1090번지)

5. 실시계획인가 신청일 : 사업시행자고시후 1개월 이내 신청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위반 처분사전통지서]

1.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또는 이사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1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공고기간 : 2007. 4. 18 ~ 2007. 5. 2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등		
2.당사자	성 명 (차량번호)	이인성외 7인 (“불임” 위반차량내역 참조)		
	주 소			
3.처분의 원인된 사실		“불임” 참조		
4.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과태료 부과, 점검·정바·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5.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동법 제37조		
6.의 건 제 출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명	교통행정과
	주 소	인천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 560-4872, FAX 560-4869)		
	기 한	2007년 5월 2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반차량내역

연번	당 사 자		위 반 사 항			비 고
	성 명	주소(사용본거지)	차량번호	위반내용	위반법규	
1	이인성	인천시 서구 석남1동 468-5 낙원아파트 3/402	05가 6739	봉인탈락	제10조3항	
2	오원섭	인천시 서구 심곡동 299-1 대영아트빌 가/201	28머 9766	번호판식별불가 (번호판가림)	제10조5항	
3	(주)대정 환경	인천시 서구 경서동 678-1	인천30러 5899	봉인탈락	제10조3항	
4	김예중	인천시 서구 석남1동 462-8	80구 7712	격벽제거	제29조1항	
5	강영진	인천시 서구 석남3동 566-25 산들하이츠맨션 103/402	인천30무 8830	방향등 청색	제29조1항	
6	김양천	인천시 서구 심곡동 298-19 서초주택 B03호	인천81다 4230	뒤번호판 봉인탈락 (정차중)	제10조3항	
7	김선동	인천시 서구 석남1동 195-15	인천80머 2873	뒤번호판 봉인탈락 (정차중)	제10조3항	
8	(주)국제조 명시스템	인천시 서구 석남2동 223-38 인천테크피아공장 가동 406	48노 2681	제동등 착색 (클리어램프개조)	제29조1항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68호

공 고 문

(확인서발급신청사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의 표시 : 인천 서구 대곡동 60-3 (전 327㎡)
2. 대장상 소유자성명 : (한글) 신 창 수 (한문) 申 昌 秀
3. 대장상 소유자등록번호 : 미상
4. 대장상 소유자주소 : 대곡리 168
5. 신청인성명 : (한글) 신 현 재 (한문) 申 鉉 在
6. 신청인등록번호 : 471015-*****
7. 신청인주소 : 인천 서구 대곡동 243-4
8. 취득사유 : 1948년 10월 20일 증여
9. 공고기간 : 2007년 4월 19일 - 2007년 6월 18일 (2개월)
10. 통지불가사유 :
11. 유의사항

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나.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7년 4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69호

공 고 문

(확인서발급신청사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의 표시 : 인천 서구 당하동 산17, 산20-1, 산20-3
(임 : 595㎡, 임 : 793㎡, 임 : 198㎡)
2. 대장상 소유자성명 : (한글) 권 중 달 (한문) 權 中 達
3. 대장상 소유자등록번호 : 미상
4. 대장상 소유자주소 : 미상
5. 신청인성명 : (한글) 권 사 일 (한문) 權 思 一
6. 신청인등록번호 : 570130 - *****
7. 신청인주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8-1 경남 APT 8-201
8. 취득사유 : 1972년 3월 8일 상속
9. 공고기간 : 2007년 4월 19일 ~ 2007년 6월 18일(2개월)
10. 통지불가사유 :
11. 유의사항

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나.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7년 4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81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백석지구 소3-1호선일원 외 1개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시설 [도로명 : 백석지구 소3-1호선일원 (사업명 : 백석지구 소3-1호선일원 도로개설공사), 도로명 : 독가촌지구 소3-1호선(사업명 : 독가촌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공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 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23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내용

가. 백석지구 소3-1호선일원 도로개설공사

구 분	백석지구 소3-1호선일원 도로개설공사	비 고
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10번지일원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소로 1류 1호선 및 4호선 ○ 규 모 : L=220m, B=6m, A=1,320㎡ L=90m, B=4m, A=360㎡	
사업 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 ○ 성 명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2007.6 ○ 준공예정일 : 2007.1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별첨 참조”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 및 지장물 조서	“별첨 참조”	

나. 독가촌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구 분	독가촌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비 고
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산10-12번지일원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소로 1류 1호선 ○ 규 모 : L=220m, B=6m, A=1,320㎡	
사업 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 ○ 성 명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2007.6 ○ 준공예정일 : 2007.1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별첨 참조”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 및 지장물 조서	“별첨 참조”	

용 지 조 서

백석지구 소 3-1호선 도로개설공사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잔여 면적 (㎡)	용도지역	소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1	백석동	22-9	대	578	1	577		당하지구 시가지조성 사업조합		인천시 서구 당하동 874-1							
2	백석동	22-13	구	75	75	-		한강농지 개발조합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							
3	백석동	19-7	답	188	188	-		김무웅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5							
4	백석동	14-7	구	802	679	123		한강농지 개발조합		경기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							
5	백석동	19-8	답	401	401	-		김용관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1			서인천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1		근저당	
6	백석동	22-11	대	105	13	92		당하지구 시가지조성 사업조합		인천시 서구 당하동 874-1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가압류	
								당하지구 시가지조성 사업조합		인천시 서구 당하동 874-1			주식회사한국 주택은행	서울지방법원		가압류	
								김영호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0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13동 502호			한국자산관리 공사	인천지방법원		가압류	
7	백석동	22-10	구	137	69	68		한강농지 개발조합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							
8	백석동	22-14	대	15	15	-		박영혜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0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13동 502호							
								김영관		서울 구로구 오류동 6-220							
								배진호		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 313 삼익아파트 6-406							

순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잔여 면적 (㎡)	용도지역 또는지구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관 리 내 용	
9	백석동	14-8	잡	98	98	-		한강농지 개발조합	경기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					
10	백석동	22-19	도	10	10	-		이춘자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8					
11	백석동	22-17	대	94	94	-		김무웅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5					
12	백석동	19-10	답	1	1	-		김무웅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5					
13	백석동	19-9	답	125	125	-		김무웅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5					
14	백석동	22-15	전	9	9	-		김무웅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5					
15	백석동	22-16	대	2	2	-		김용민	인천광역시 서구 신원동 281-33					
16	백석동	19-3	도	78	78	-		허 욱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8-2					
계				2,718	1,858	860								

지 장 물 조 서

번 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식, 주)			실제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계	편입면적	잔여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 리내용	
1	백석동	22-13	한전주	8627Q 001	1.0									
2	"	14-8	"	8627S 092	1.0									
3	"	22-5	채신주	C-201 1301-25	1.0									
4	"	14-3	"	C-201 1301-25	1.0									
5	"	19-7	"	03-9 7-14-20	1.0									
6	"	14-7	"	KT 224	1.0									
7	"	19-9	"	확인불가	1.0									
8	"	19-8	수목	은행나무	3.0									
9	"	22-8	"	이팝나무	48.0									
10	"	22-17	"	연신희, 자신희	480.0									

수 목 헌 향 조 서

(소로 3-1 호선)

일련 번호	소 재 지	위치(NO.)	방향	수량	수 목 명	비 고
1	백석동 38-6	NO. 6+15.50	우	2	수 목	
2	백석동 산10-3	NO. 6+18.00	좌	1	수 목	
계				3		

한전주 헌향조서

(소로 3-1 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위치(NO.)	방향	수 량	전주번호	비 고
1	0	NO. 3+10.00	0	1		
2	백석동 38-6	NO. 4+3.00	0	0		
3	0	NO. 6+8.50	0	0		
계				1		

가옥현황조사서

(소로 3-1호선)

조서 NO.	도면 NO.	소재지			용도	구조 및 규격	총수량 (㎡)	면적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내용및 종류	
1	1	백석동	산10-3임, 38-6전		창고	스래이트/ 목재/파이프	14.7	14.30	배용옥					
2	2	백석동	38-6전,38- 5전,38-4전		비닐 하우스		140.9	17.22	성주이씨 중증	인천서구 가좌동 206				
3	3	백석동	38-4전, 38-3전		비닐 하우스		158.1	120.11	민대기	인천 서구 서천동 신6				
계							313.6	151.6						